

대전지방법원 2021. 4. 8 선고 2020가단127538 판결 [계약금반환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1. 2. 4

판결 선고 2021. 4. 8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. 9. 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2018. 1. 6. C 주식회사(이하 'C'라 한다)로부터 강원 영월군 D 외 6필지 소재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.

나. 피고는 2018. 7. 31. 원고에게 위 태양광발전소 중 허가번호 : E 태양광발전사업 권을 매매대금 215,000,000원에 양도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양도계약'이라 한다).

다. 원고는 2018. 7. 31.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4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 라. C는 당초 2020. 12. 3. 까지 위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위한 시설을 완비하기로 하였으나 C가 수분양자들과 약정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2020. 12. 3.까지 위 시설을 완비하는 것은 어려워졌고,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9. 8.경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고, 피고는 2019. 12. 31.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40,000,000원을 반환하되, 피고는 원고에게 2020. 1.부터 위 계약금을 전부 반환할 때까지 매달 위 40,000,000원에 대하여 연 5%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며, 피고가 그 이자지급을 해태하면 그 즉시 계약금 40,000,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약정'이라 한다).

마. 피고는 위 계약금에 대한 이자로 2020. 1. 31. 및 2020. 4. 27. 원고에게 각 166,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 계약금 4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. 9. 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C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C와 피고 사이의 문제일 뿐, C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보인다.

따라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권세진